

〈번역논문〉

則天武后와 武周革命*

정 병 준**

高宗과 武照

고종 李治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황태자가 되어 그대로 즉위로 이어졌다. 그에게는 특별한 정치적 야심이나 전망이 없었는데, 주위의 기대는 오히려 그래서 좋았다. 그에게 요망된 것은 태종이 정해놓은 방침을 준수하고 매일 큰 과오 없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며 나머지는 長孫無忌 등이 모두 처리하면 되었다. 태종은 그렇게 고종의 위치를 정하고 또 아내도 太原 王氏의 여성을 간택한 뒤 죽었다. 태원 왕씨는 山東貴族에 속하였지만, 그녀 집안은 일찍부터 關隴 계열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즉위 후 곧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일이 터졌다. 즉 後宮¹⁾의 여성문제이다. 황후가 된 왕씨에게는 자식이 생기지 않았고, 고종은 蕭淑妃

* 이 글은 氣賀澤保規, 「則天武后と武周革命」, 『絢爛たる世界帝國 - 隋唐時代』, 講談社, 2005, 82~90쪽을 번역한 것이다. 각주는 번역자가 이해의 편의를 위해 붙인 것이다.

** 동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1) 後宮의 개념에 관해서는 氣賀澤保規 저, 정병준 역, 「唐代的 皇后와 皇太子」, 『한국 고대사탐구』 29, 2018, “후궁은 황후를 정점으로 하여 그 아래에 妃嬪 계열이 늘어서 있다. 이를 內宮 혹은 內命婦, 內職이라고도 한다. …… 후궁에는 통상 수천 인의 여인들이 기거하였다”(616~618쪽)라고 한다.

와 그 사이에서 생긴 素節을 예뻐하며 왕씨에게서 멀어져간 것이다. 그러자 왕씨는 두 사람의 관계를 갈라놓기 위해 한 명의 여성을 끌어들었다. 일찍이 태종의 후궁에서 才人이었던 武照라는 여성이다.

고종이 22세에 즉위하였을 때 무조는 여자 한창 나이인 27세였다. 통설에 의하면 그녀는 태종 사후에 그 후궁 여인들과 함께 장안성 안의 感業寺라는 절에 출가하여 태종을 供養하고 있었는데, 그때 고종이 부친의 法要를 위해 절을 방문하였다가 관계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이상한 점이 많다. 애초 감업사의 위치가 명확하지 않고 또 절에서 태종의 위패를 모시고 법요를 행하는 것 등은 본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황제의 영혼은 太廟라는 곳에 봉안된다. 더구나 당시는 道教를 우선하고 불교를 그 아래에 둔 시대이다. 아마도 두 사람은 태종을 간병하던 침상 옆에서 알게 되었고 어느 시점에 도덕에 어긋나는 관계를 맺었는데, 태종 사후 그것을 안 왕황후가 무조를 궁중으로 불러들인 것이 실상일 것이다.

궁중에 다시 등장한 무조는 소씨로부터 고종을 떼어내는 역할을 완수하자 그 칼날을 바로 왕황후로 돌려 고종을 독점하고 마침내 황후 자리까지 빼앗았다.²⁾ 그 과정에서 그녀는 태종의 유족을 받은 장손무기와 褚遂良 등과 대치하였지만, 최종적으로 증신인 李勣이 “이는 폐하의 집안일”이라며 뒤로 빠진 것을 구실로 하여 결착된 것이다. 영휘 6년(655) 10월의 일이다.³⁾ 중국사에서 유례가 없는 2朝(두 지아버)를 섬기고 더군다나 황후 자리

2) 『구당서』 권51, 后妃傳上, 高宗廢后王氏, “俄又納李義府之策, 永徽六年(655)十月, 廢后及蕭良娣皆爲庶人, 囚之別院. 武昭儀令人皆縊殺之”(2170쪽).

3) 『구당서』 권4, 高宗本紀上, 영휘 6년 10월 조, “己酉, 廢皇后王氏爲庶人, 立昭儀武氏爲皇后, 大赦天下”(74쪽); 同, 11월 조, “丁卯朔, 臨軒, 命司空[李]勣·左僕射[于]志寧冊皇后, 文武羣官及番夷之長, 奉朝皇后於肅義門. 十一月己巳, 皇后見于廟”(74~75쪽); 『신당서』 권3, 高宗本紀, 영휘 6년 10월 조, “己酉, 廢皇后爲庶人. 乙卯, 立宸妃武氏爲皇后”(56쪽); 『자치통감』 권200, 영휘 6년 10월 조, “己酉, 下詔稱, ‘…(廢爲庶人)

에까지 오른 것이다. 이는 중국의 전통적 관념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이 허용된 것에서 당조가 지닌 北族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그러나 武后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고종이 政務를 볼 때면 배후에 주렴을 늘어놓고 이것저것 관여한 것이다. 흔히 말하는 垂簾聽政으로 사람들은 두 사람을 二聖이라고 불렀다.⁴⁾ 30여 년에 걸친 고종의 치세는 처음 얼마 간[數年]을 제외하면 실제적으로 무후에 의해 움직였다.⁵⁾ 그 사

…’. 乙卯, 百官上表請立中宮, 乃下詔, ‘…… (武氏)可立爲皇后”(6293~6294쪽); 同, 11월 조, “丁卯朔, 臨軒命司空李勣齎綬冊皇后武氏. 是日, 百官朝皇后於肅義門. 故后王氏·故淑妃蕭氏, 並囚於別院. 上嘗念之, 間行至其所, ……”(6294쪽).

4) 『자치통감』 권201, 高宗 麟德 원년(664) 12월 조, “丙戌, [上官]儀下獄, …… 戊子, 賜[故太子]忠死于流所. …… 自是上每視事, 則后垂簾於後, 政無大小, 皆與聞之. 天下大權, 悉歸中宮, 黜陟·殺生, 決於其口, 天子拱手而已, 中外謂之二聖”(6343쪽); 『구당서』 권6, 則天武后本紀, “永徽六年, 廢王皇后而立武宸妃爲皇后. 高宗稱天皇, 武后亦稱天后. …… 帝自顯慶已後, 多苦風疾, 百司表奏, 皆委天后詳決. 自此內輔國政數十年, 威勢與帝無異, 當時稱爲二聖”(115쪽); 『신당서』 권4, 측천무후본기, “高宗自顯慶後, 多苦風疾, 百司奏事, 時時令后決之, 常稱旨, 由是參豫國政. 后既專寵與政, 乃數上書言天下利害, 務收人心, 而高宗春秋高, 苦疾, 后益用事, 遂不能制. 高宗悔, 陰欲廢之, 而謀洩不果. 上元元年, 高宗號天皇, 皇后亦號天后, 天下之人謂之二聖”(81~82쪽).

5) 서영교, 「唐高宗 百濟撤兵 勅書의 背景」, 『동국사학』 57, 2014에서는 “662년 2월 소정방이 평양에서 철수했고, 같은 해 3월 철록반란을 진압하려 간 당군 1만 3천 8백의 전사하는 등 당고종의 외정에 실패했을 즈음 측천무후는 조정을 어느 정도 장악한 상태였다. 그 해 7월 이전에 백제철병 칙서가 내려졌고, 이어 [10월] 태산 봉선 조서가 내려다”(338쪽), “측천무후는 황제가 주재하는 이 신성한 의례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 것으로 보인다. 당조의 미래보다 내부의 권력 장악에 관심이 있었던 측천무후는 백제에서 전쟁을 중지시키는 칙서를 내리게 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으로 보인다”(340쪽), “[하지만] 662년 12월[에 이르러] 2달 전 반포된 용삭 4년(664) 정월에 예정된 태산봉선의례는 중지되었다. …… 한반도에서 향후 벌어질 전쟁 때문인 듯하다”(340쪽), “[그 후] 664년 7월 고종은 666년 정월에 태산에서 봉선을 시행하겠다는 칙문을 재차 발표했다”(340쪽)고 하고 이어 “첫 봉선 조서가 내려진 662년에는 황제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 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황후에게 통제를 당하던 것을 분하게 여기던 황제는 664년 10월부터(10월예?) 친위 쿠데타(즉 上官儀 사건)를 모의하게 된다”(341쪽), “664년 [10월] 사건으로 측천무후는 권력을 완전히 장악했다. …… 664년 (7월) 결정된 봉

이에 隋唐 두 왕조의 현안이었던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즉 당은 현경 5년(660) 신라와 연대하여 먼저 백제를 멸망시키고 구원에 나선 일본(倭)의 군대를 白江(白村江)에서 전멸시켰다(663).⁶⁾ 이리하여

선의례는 662년 경우처럼 결코 반복되지 않았다. [즉] 664년 연개소문이 죽고 이듬해 그 아들 사이에 內戰이 일어나, 위기에 처한 男生이 원병을 청했지만 당 조정은 이를 끝내 묵과했다. …… 665년 8월 …… 취리산에서 맺은 맹약의 맹세문을 작성한 유인궤는 [같은 달] 신라·백제·왜·탐라 등 4국의 사신을 이끌고 태산의 봉선에 참석하기 위해 당나라로 향했다(갔다?). 고구려를 멸망시킬 절호의 기회가 왔지만 666년 정월에 乾封封禪은 실행되었다”(341~342쪽)고 한 후 맺음말에서 “662년(7월) 백제 웅진성에 주둔한 유인궤 등에 철수를 권유하는 당고종의 칙서 …… 물론 그것이 전적으로 당고종의 의지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 662년 초 당이 고구려와 철록에게 패배했다. 연이은 패전 상황은 측천무후가 태산 봉선 여행을 밀어붙이는 기회를 주었다. 662년 10월 봉선의례 발표가 있었다. …… 당조의 미래보다 내부의 권력 장악에 관심이 있었던 측천무후는 백제에서 전쟁을 중지시키고 봉선의례를 거행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 『자치통감』 권201, 인덕 원년(664) 10월 조에 이전의 상황을 전하는 기록을 보면 측천무후가 당고종을 통제하고 있었다”(345~346쪽)라고 한다. 매우 흥미로운 견해라고 생각된다. 다만 이상의 서술만으로는 ① 664년 정월로 예정된 봉선이 662년 12월에 취소된 이유가 반드시 명확하게 느껴지지는 않는다. 즉 같은 해(662) 7월 백제 철군 칙서까지 내렸던 상황에서 왜와의 전쟁에 어떤 의미가 있기에 봉선을 철회하였는가, 또 “향후 벌어질 전쟁”이 고구려를 멸망시킬 수 있는 전쟁보다도 중요했던 것인지, 아니면 무후의 권력이 아직 약했기 때문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② 666년 정월의 봉선이 거행된 이유는 측천무후가 권력을 완전히 장악했기 때문인 듯이 말하지만, 다른 요인은 전혀 없는가라는 생각이 든다. 전체적으로 唐의 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한 위에 더욱 명료한 논지의 연구가 나오길 기대한다.

- 6) 서영교, 「乾封元年(666) 封禪문제와 唐의 對고구려 정책」, 『대국사학』 120, 2015, “당고종대 측천무후가 주도했던 봉선이 연기되었던 적도 있다. 662년 당시 막후실력자였던 측천무후는 황제가 주재하는 이 신성한 의례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자신 권력의 정통 결여라는 자괴감을 彌封하고 불안한 정치적 지위를 안정화시키려고 했다. 내부의 권력 장악에 관심이 있었던 측천무후는 그해 백제에서의 전쟁을 중지시키는 칙서를 내리게 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으로 보인다. [즉] 662년 10월에 용삭 4년(664) 정월 예정 태산봉선의례가 반포되었다. 하지만 유인궤의 완강한 요구로 당조정은 663년에 백제에 병력을 보내게 되었다. 왜의 대군이 백제에 몰려올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당조정은 선단을 파병하지 않을 수 없었

고구려를 남북에서 협격할 태세를 갖춘 뒤 총장 원년(668) 李勣을 총대장으로 한 唐軍이 평양을 함락시키니 고구려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수 시기에 4회, 당태종 시기에 3회에 걸친 원정, 고종대에 이르러 10년을 넘는 공방을 거친 결과이다. 고구려의 멸망은 한편으로는 무후정치의 승리를 강하게 인상짓는 사건이다.⁷⁾

다. 한반도에서 향후 벌어질 전쟁 때문에 662년 12월[에 이르러] 용삭 4년(664) 정월로 예정된 봉선의례는 연기되었다. 663년 8월 당은 신라와 함께 왜·백제연합군을 白江에서 물리쳤다. 전쟁은 봉선의례 거행을 중지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었다. 664년 7월 고종은 666년 정월에 태산에서 봉선을 시행하겠다는 칙문을 재차 발표했다. 측천무후 입장에서 이번에는 봉선을 결코 번복할 수 없었다”(91~92쪽), “고구려를 멸망시킬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해도 측천무후는 666년 정월의 乾封封禪을 실행해야 했다”, “666년 정월 1일 당고종이 태산 남쪽에서 昊天上帝에게 제사를 지냈고, 다음날 태산으로 올라갔다. ……(측천무후가 亞獻를 하였다)…… 봉선은 측천무후의 권력 장악을 세계만방에 알리는 이벤트로 변질되었다”(93쪽)라고 한다. 앞서 “664년 [10월] 사건으로 측천무후는 권력을 완전히 장악했다”라고 하였는데, 과연 고구려 멸망의 기회를 미루면서까지 “권력 장악을 세계만방에 알리는 이벤트”를 열어야 했을까라 생각이 든다.

- 7) 黃約瑟에 의하면 측천무후는 기본적으로 고종과는 달리 전쟁보다 평화를 택했다고 한다. 즉 정병준·차오링 역, 「武則天과 한반도 정세」, 『신라사학보』 35, 2015, “무측천이 황후에 오른 주요 수단 역시 조정의 주의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조정의 장애를 제거하는 것이었다. 고종 후기의 외교정책이 설령 친척적이고 강경하였다고 해도, 황제와 황후 두 사람이 공동으로 추진한 결과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는 없다. …… 674년 무측천은 ‘意見十二條’를 올렸는데, 내용상으로 각 조문은 중요성에 따라 차례로 배열하였다. 그중 제3조는 “전쟁을 멈추고[息兵] 도덕으로 천하를 교화한다”는 것이다. 이는 무측천의 권력이 날로 커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아직 자신의 주장을 의견서 형식으로 표현해야 했고 또 국가 정책의 최후 결정권이 아직 고종에게 있었음을 보여준다. …… 다음 해(675) 劉仁軌가 한반도에서 신라와의 전쟁 중에 서둘러 군대를 철수한 것은 어쩌면 무측천이 조정에 미친 영향과 관련이 있다는 의문을 품을 수 있다”(231~232쪽), “[고종] 즉위 후에는 군대를 통솔하려는 충동이 있었다”(236쪽), “외교정책에 대한 고종과 무측천의 의견은 자못 달랐음을 알 수 있다”(237쪽), “고종과 무측천의 대외 정책에 대한 견해 차이는 무측천이 정권을 장악한 후 분명하게 드러난다. 고종의 遺詔에 “永徽 연간 이래 군대에 들어가 50세가 된 자는 모두 군대에서 내보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 보

무후의 권력 탈취 노정

則天武后의 '측천'은 그녀가 죽은 후 주어진 칭호이다(諡號). 따라서 황제에까지 오른 그녀는 본래 측천황제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측천황후라고 부르는 것이 적당하지만,⁸⁾ 여기서는 해당 表記에 가깝고 더구나 그 존재를 느끼게 하는 측천무후 혹은 무후라는 명호를 사용하겠다. 또한 陳寅恪 쯤부터 널리 사용된 武則天이라는 명칭이 있지만, 이는 그녀가 수행한 황후 그리고 황제로서의 역사성을 애매하게 하는 무미건조[無機質]한 칭호이기 때문에 나는 취하지 않겠다.

무후는 690년에 황제에 오르는데, 신정권은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황후 취임 이후 35년이나 걸려 비로소 가능하였다. 그 기간에 여성이 정치 표면에 나오는 것에 대한 저항을 배제하면서 자신의 정치기반 확립에 전력을 기울였다. 그를 위해 무후 자신의 정치세력을 구축할 필요가

인다. 소위 유조는 권력을 장악한 자가 죽은 자의 이름을 빌려 반포한 것으로 후계자의 주장이 죽은 자의 遺願보다 더 많이 반영된다. 당시 무측천의 권력은 아직 공고하지 못했다고 해도, 이미 그녀 주장의 一端을 볼 수 있다”(237~238쪽), “요컨대 먼 곳의 수자리[遠戍]를 줄이고 변경[邊防]에 둔전을 열면서 많은 우방을 만드는 것이 무측천 집권 초기의 주요 외교 책략이었다. 세 가지 전략은 상호 보완을 이루며 서로 모순되지 않았는데, 그 基調는 평화를 중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중국과 한반도 국가의 관계를 연구할 때는 이런 점을 참고·비교해야 할 것이다”(242~243쪽)라고 한다. 여기서 “그녀는 아직 자신의 주장을 의견서 형식으로 표현해야 했고 ……”라는 견해와 관련해서는 앞에서 二聖이라고 한 서술의 각주에 적은 『신당서』 기사 등을 참조하여 음미해 볼 수 있다.

- 8) 『구당서』 本紀와 『신당서』 本紀에서는 高宗本紀와 中宗本紀 사이에 則天皇后本紀를 설정하여 그녀가 고종 사후 天后에서 皇太后가 되어 “臨朝稱制”한 시기부터 武周 시기까지를 일괄하여 서술하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황후라고 칭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실체에 있어서 황제의 권한을 행사했음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명분과 실체를 절묘하게 합치시킨 것이라 하겠다.

있었고 그 거점으로 洛陽이 선택되었다. 낙양은 무후시대에 神都로 명칭이 바뀌었다.⁹⁾

태종 貞觀 연간에 정치 실권을 잡은 關隴系 그룹의 우위성을 확인하기 위해 가문 서열을 만들게 하였다. 하지만 만들어진 것은 산동귀족인 博陵 崔氏를 1위에 두고 唐室인 隴西 李氏를 3위로 한 것이었다. 이에 분노한 태종은 당실을 가장 높게 수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 만들어진 것이 『貞觀氏族志』라는 것이다.¹⁰⁾ 당시에도 여전히 산동계 귀족이 隱然한 힘을 가졌음을 말하는 에피소드이다.

무후는 본적이 山西 太原 관내의 文水縣이고 부친 武士護은 목재상인으로서 당의 거병에 참가한 신참이었다. 즉 앞의 두 계열과는 전혀 다른 寒門(非門閥)이다. 그에 따라 먼저 같은 한문 계열인 許敬宗과 李義府 등이 모여 그녀의 선도역할을 하였고 그 일환으로 『姓氏錄』이라는 새로운 씨족지가 편찬되었다.¹¹⁾ 이는 현재의 상위 官位와 勳位에 위치한 사람을 중심으로 하고 가문만을 자랑하는 문벌계를 배제한 것이다. 관공과 산동의 문벌세력과는 다른 제3의 신흥·비문벌의 인물들이 등장하는 계기가 무후의 출현으로 마련되었다.

9) 『신당서』 권38, 地理志2, 河南道, 東都 조, “隋置, 武德四年廢. 貞觀六年號洛陽宮, 顯慶二年曰東都, 光宅元年曰神都, 神龍元年復曰東都, 天寶元年曰東京, 上元二年罷京, 肅宗元年復爲東都”(981~982쪽); 同, 河南府·河南郡 조, “本洛州, 開元元年爲[河南]府, …… 縣二十. 河南, 洛陽, 偃師, ……”(982쪽).

10) 『구당서』 권3, 太宗本紀下, 貞觀 12년(638) 정월 조, “乙未, 吏部尙書高士廉等上氏族志一百三十卷”(49쪽); 『자치통감』 권195, 정관 12년 정월 조, “吏部尙書高士廉·黃門侍郎韋挺·禮部侍郎令狐德棻·中書侍郎岑文本撰氏族志成, 上之. 先是, …… 乃更命刊定, 專以今朝品秩爲高下, 於是皇族爲首, 外戚次之, 降崔民幹爲第三. 凡二百九十三姓, 千六百五十一家, 頒於天下”(6135~6136쪽).

11) 『자치통감』 권200, 顯慶 4년(659) 6월 조, “丁卯, 詔改氏族志爲姓氏錄. 初, 太宗命高士廉等脩氏族志, 升降去取, 時稱允當. 至是, 許敬宗等以其書不敘武氏本望, 奏請改之, 乃命禮部郎中孔志約等比類升降, 以后族爲第一等, 其餘悉以仕唐官品高下爲準, 凡九等. 於是士卒以軍功致位五品, 豫士流, 時人謂之勳格”(6315쪽~6316쪽).

무후는 문벌에 얽매이지 않는 인재를 확보하여 자신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대에 시작된 科擧를 중시하였다. 그 科目은 먼저 유교 이해력을 묻는 明經科와 문학 능력을 묻는 進士科에 인기가 집중되었고 종래에 없었던 국가의식에 눈뜬 인물 군상이 점차 증가하였다. 무후는 한편으로 門地에 구애받지 않고 재능 있는 인재를 브레인으로 기용하여 측근에 두었다. 이는 北門學士라고 불렸다.¹²⁾ 그들에게 기대한 것은 다가올 그녀 시대의 방향을 잡는 일이었다.

女帝의 왕조 武周政權의 성립

권력을 착착 굳혀가던 무후는 여러 가지 반대에 부딪혔다. 최초는 장손무기와 그와 연계된 태종 이래 舊臣들의 저항이고 나중에는 光宅 원년(684) 이적의 손자인 李敬業이 일으킨 반란이었으며, 그 외에도 당시 계열 사람들의 거병과 권력 탈취 기도가 있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저항의 움직임은 산발적이어서 각개 격파되었다. 결국 그녀가 차례로 풀어내는 책모에 사람들은 농락되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가운데 당 체제에 내재된 약점이 노출되었다.

弘道 원년(683) 말에 고종이 죽었다. 그러자 무후는 곧바로 황제에 즉

12) 『자치통감』 권202, 고종 上元 2년(675) 3월 조, “天后多引文學之士著作郎元萬頃·左史劉禕之等, 使之撰列女傳·臣軌·百僚新戒·樂書, 凡千餘卷. 朝廷奏議及百司表疏, 時密令參決, 以分宰相之權, 時人謂之北門學士”(6376쪽); 同 권217, 玄宗 天寶 13載(754) 정월 조, “唐初, 詔敕皆中書·門下官有文者爲之. 乾封以後, 始召文士元萬頃·范履冰等草諸文辭, 常於北門候進止, 時人謂之北門學士. 中宗之世, 上官昭容專其事. 上即位, 始置翰林院, 密邇禁廷, 延文章之士, 下至僧·道·書·畫·琴·棋·數術之工皆處之, 謂之待詔. 刑部尚書張均及弟太常卿均皆翰林院供奉”(6923쪽).

위하지 않고 일단 황태후가 되어 아들에게 황위를 잇게 하고 전권을 손에 쥔 채 본격적인 길 고르기에 들어갔다. 먼저 銅匱라고 불리는 銅製 투서함을 비치해 두고 아래에서 올라오는 밀고를 장려하고, 또 酷吏라고 불리는 무뢰배들을 기용하여 반대파를 제거하는 공포정치를 시행하였다. 그 한편으로 하늘의 계시가 적혀 있다는 寶圖(天授聖圖)를 낙양의 洛水에서 출현 시키게 하고 상고시대 周의 政事堂이라는 明堂을 복원하고, 또 20자 가량의 독특한 문자 즉 측천문자를 제작하여 엄격하게 사용시켰다. 『大雲經』이라는 불교경전을 전국토에 세운 大雲(經)寺에 비치하여 평화스러운 불국토의 도래를 기대하게 한 것도 이 단계의 일이다.

이러한 꼼꼼한 준비와 연출을 거쳐 天授 원년(690) 9월 무후는 새로운 왕조를 열었다. 국호를 周라고 하였으므로 이 정권교체를 무주혁명이라고 부르는데, 이에 따라 당은 일시적으로 명맥이 끊어졌다. 이때 그녀의 나이는 67~68세가 되었을 무렵으로 아직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쇠미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사에서 유일한 여성 황제의 시대를 열었다.

皇后·女帝 시기를 합치면 반세기가 되는 측천무후 시대, 그중에서도 그 후반기는 정치가 전체적으로 안쪽을 향하였다. 권력 굳히기를 위해 에너지의 태반을 할애한 때문으로 정치 중심에 계속 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상상하게 한다. 그 결과 오랫동안 陰山山脈(내몽골) 일대에 묶여있던 突厥이 먼저 永淳 원년(682) 당의 사슬을 풀고 자립하여 骨咄祿을 추대함으로써 제2 可汗國을 세웠다(일테리쉬 카간).¹³⁾ 이에 자극된 듯 萬歲通天 원년(696) 營州(遼寧省) 부근에 있던 契丹族이 반란을 일으켰고 또 이에 편승하여 영주로 이주되어 살던 고구려·말갈계의 遺民이 달아나 발해국으로 이어지는 기반을 만들었다(本書 329쪽).

그러한 주변민족의 움직임이 격화되고 아울러 통치의 이완이 겹치면

13) 정재훈, 『돌궐 유목제국사(552~745)』, 사계절, 2016, 405~413쪽 등 참조.

서 체제 말단에서는 체제를 지탱하는 府兵制·均田制·租庸調制가 동요되기 시작하며 사회 변질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가장 영향을 받은 것은 말단에 살던 민중들이었고 그 무렵부터 토지를 떠나 도망하는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하였다. 여성 황제의 등장엔 눈을 빼앗긴 사이에 律令支配 체제의 근저에서 부식이 확실히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武韋의 화란

神龍 원년(705) 정월 황태자¹⁴⁾를 추대하는 쿠데타 군대가 낙양의 북문인 玄武門을 돌파한 후 궁중으로 진입하여 무후의 궁전을 포위하였다. 무후가 아끼던 張易之 형제를 군주 측근의 간신으로 지목하여 그들을 제거한다는 것을 명목으로 삼은 거사였다. 이로 인해 무후는 유폐되고 武周朝가 종언을 고하며 당이 부활하였다. 쿠데타 군대를 움직인 중심에 섰던 재상 張柬之 등은 과거 출신 관료이다. 무후는 자신의 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육성한 과거관료에 의해 아이러니하게도 명맥이 끊어진 것이다.

이렇게 즉위한 中宗은 기실 믿을 만한 남자가 아니었다. 여성들이 너무 강했다고 해야 할 지도 모른다. 중종의 처인 韋后는 시어머니인 무후와 마찬가지로 권력욕이 강했고 딸인 安樂公主는 황태자가 아닌 皇太女가 되어 함께 女帝가 되려는 야심을 품었다.¹⁵⁾ 그 중간에서 움직인 것이 上官婉兒

14) 中宗 李顯이다. 즉 任士英 저, 류준형 역, 『황제들의 당제국사』, 푸른역사, 2016, 120~121쪽 참조.

15) 『구당서』 권7, 中宗本紀, 景龍 4년(710) 5월 조, “時安樂公主志欲皇后臨朝稱制, 而求立爲皇太女, 自是與后合謀進鴆”(150쪽); 『資治通鑑』 권209, 景龍 4년 5월 조, “安樂公主欲韋后臨朝, 自爲皇太女, 乃相與合謀, 於餅餽中進毒, 六月, 壬午, 中宗崩於神龍殿”(6641~6642쪽).

라는 여성이었고, 게다가 증종의 여동생인 太平公主가 隱然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위후 모녀는 특히 사복을 채우고 권세를 키우기 위해 賣官을 크게 행하고 독단으로 官位를 뿌렸다. 그것을 墨勅斜封官¹⁶⁾이라고 부른다. 그러면서 위후 모녀는 무후가 밟은 것과 같은 길을 걷기로 결정하고 景龍 4년(710) 6월 방해가 된 증종을 독살하였다.

이는 착실하게 공들여 준비한 무후의 경우와 달리 제멋대로 시도한 행동이어서 일거에 불만이 치솟아 증종의 조카 李隆基가 決起하여 위후 등을 죽였다. 이용기는 증종의 동생인 부친을 황제로 세우고(睿宗) 자신은 황태자가 되었다. 하지만 여성의 권세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아직 태평공주가 남아 오빠인 예종을 끼고 실권을 잡아 이용기의 권력을 깎으려고 하였다. 위기감을 느낀 이용기는 先天 2년(713) 7월 군대를 움직여 태평공주를 자살하게 만들었다. 이로써 여성들이 정치를 움직이는 시대가 끝나고 남자들이 다시 정치의 주역이 된다. 이용기야말로 그 중심에 선 현종에 다름 아니다.

무후로부터 위후로 이어지는 여성들의 시대는 후세에 가장 꺼려하는 ‘武韋의 화란’으로 통칭된다. 다만, 생각해 보면 이 정도로까지 여성들이 활발하게 정치에 관여한 시기는 달리 찾을 수 있을까. 왜 이러한 여성들의 세상이 출현한 것일까. 간단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당이라는 시대는 여성들의 이러한 활동을 용인하는 토양이 있었고, 따라서 여성이 권력을 움직이더라도 사회가 반드시 격렬하게 반발하지는 않았던 점은 알 수 있다. 동시에 무후 등의 등장에 딱 맞춘 듯이 일본에서는 持統天皇이 즉위하고

16) 『신당서』 권45, 選舉志下, “中宗時, 韋后及太平·安樂公主等用事, 於側門降墨勅斜封授官, 號斜封官, 凡數千員”(1176쪽); 『자치통감』 권209, 中宗 景龍 2년(708) 7월 조, “安樂·長寧公主及皇后妹郾國夫人·上官婕妤·婕妤母沛國夫人鄭氏·尚宮柴氏·賀婁氏, 女巫第五英兒·隴西夫人趙氏, 皆依勢用事, 請謁受賂, 雖屠沽臧獲, [胡三省注: 臧獲, 奴婢也] 用錢三十萬, 則別降墨勅除官, 斜封付中書, 時人謂之斜封官, 錢三萬則度爲僧尼. 其員外·同正·試·攝·檢校·判·知官凡數千人”(6623쪽).

(재위 690~697), 신라에서는 이보다 조금 앞선 7세기 중반에 善德女王과 眞德女王 정권이 성립되었다. 당시의 동아시아에는 여성들을 대두시키는 시대적 분위기가 있었던 것일까.